

별첨

---

#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금융안정·금융발전에 기반한 경제성장 뒷받침  
+ 포용금융 확산”

---

2021. 12. 22.



금융위원회



## 목 차



I.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	1
II. 2022년 금융정책 추진 여건 및 방향 .....	7
III. 2022년 핵심 추진과제 .....	9
1.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2. 금융역동성 제고 및 금융발전 유도	
3. 실물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	
4. 포용금융과 금융신뢰 확산	
IV. 쟁점과제 관리방안 .....	27
1. 가계부채 관리 vs. 실수요 공급	
2. 최고금리 인하 vs. 저신용층 자금애로	
V.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29
<b>【별첨1】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b>	
<b>【별첨2】 4년 반 성과/2022년 계획 관련 체감사례</b>	

# I.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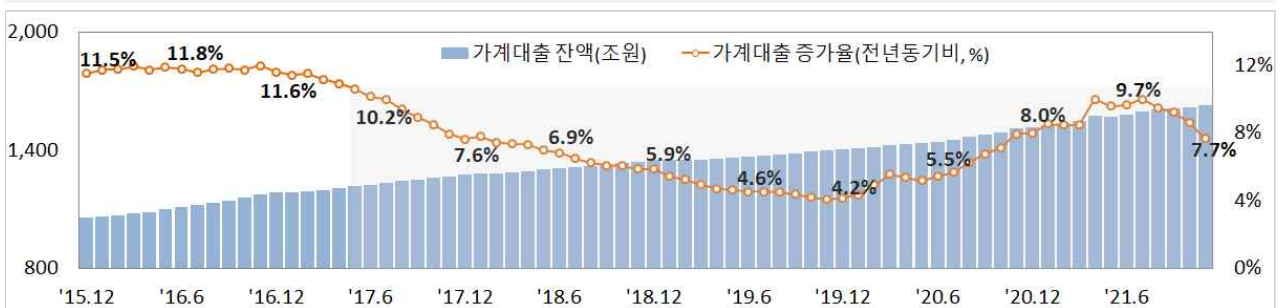
## 1 주요 정책성과

- ◇ 금융불안 요인에 선제 대처하여 **확고한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 ◇ 금융에 경쟁과 융합의 새 바람을 불어넣어 **금융산업 지평 확대**
- ◇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을 확대하여 **경제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
- ◇ 소비자보호 강화, 취약계층 부담경감을 통해 **상생의 금융여건 조성**

### 가. 【금융안정】 가계부채, 코로나19 등 불안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

-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정책 추진으로 가계부채 발생 잠재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가계부채 관리강화로 '17년~'19년간 가계부채 증가세는 하향안정화
    - \*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월) 시행, LTV 강화(→주택가격 변동위험 완충) 및 DSR 도입(→총부채 상환능력 심사) 등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확립
    - \* 가계부채 증가율(기간중연평균, %) : ('14~'16년) 10.2% ('17~'19년) 5.9%
  - '20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불가피하게 높아졌으나, '21.下 이후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로 다시 안정세로 전환
    - \*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폭 강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1.10월)」 마련
    - \* 가계부채 증가율(전년동기비, %) : ('16)11.6 ('18)5.9 ('20)8.0 ('21.6월)9.7 (9월) 9.2 (11월) 7.7
  - 대출구조, 건전성 등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는 꾸준히 개선
    - \* 분할상환비중(%) : ('15) 38.9 → ('21.3Q) 54.6 / 고정금리비중(%) : ('15) 35.7 → ('21.3Q) 46.1
    - \* 가계대출 연체율(은행권, %) : ('15) 0.33 ('17) 0.23 ('19) 0.26 ('21.3Q) 0.17

全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



\* 자료 : 금융감독원

□ **코로나19 위기시 “175조원+@ 금융대응조치” 등을 과감·신속하게 시행하여 위기확산을 차단하고 피해극복 지원**

○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하여 신규자금 공급,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으로 유동성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지원

- \*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별대출·특례보증, 캠프 신용회복 지원 등 → 41.4조원 지원(~'21.11월)
- \* 소상공인·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 272조원 지원(~'21.11월)

○ 기업자금조달 애로경감을 위하여 우대자금 지원, P-CBO 발행,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자산매각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가동

- \* 기업자금조달 지원 프로그램 지원 총계 → 총 65.0조원 지원(~'21.11월)

○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SPV) 등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하여 금융시장 불안·경색차단

- \* 채안펀드, 증안펀드, 저신용SPV 등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 총계 → 총 18.1조원 지원(~'21.11월)

□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발 위기차단**

○ 조선·항공업 등 상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부실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을 통해 시장중심 구조조정 기조 확립

⇒ 대내외 위협요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정부의 금융안정조치에 대한 대외평가도 양호



**금융안정정책에 대한 대외평가**

- ☑ “한국의 신속한 금융시장안정화 조치, 신용공급 확대 등 과감한 정책대응이 코로나충격 완화에 기여” (‘21년, IMF)
- ☑ “한국은 가계의 양호한 채무상환능력 및 LTV, 고정금리·분할상환 구조 등으로 가계부채발 위험을 충분히 억제가능” (‘21년, Fitch·S&P 등 신평사)

## 나. 【금융발전】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 혁신과 융합을 적극 추진

- **진입규제 합리화, 신규인가 등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발전 촉진**
  -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거쳐 소규모·특화 금융업 도입 등 진입규제 완화, 금융회사 신규인가 등을 추진하여 금융산업내 경쟁 제고
    - \*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도입, 신용조회업 스몰라이선스 도입, 증권사 분사·인수 허용 (1그룹1증권사 원칙 폐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부동산신탁업 등 신규인가 등 추진
  - 인터넷전문은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터넷전문은행發 금융혁신, 소비자편익 제고 및 금융서비스 질(質) 향상 등 유도
    - \*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19.1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21.6월) 등
    - \* 인터넷은행 가입자수 : ('17년) 555만명 → ('21.11월말) 2,360만명
- **금융의 디지털化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금융인프라·제도를 개편하여 금융혁신 촉진 및 소비자 편익 제고**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통해 디지털 금융 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 및 경쟁질서 정립
  - 오픈뱅킹 서비스 시행, 마이데이터산업 도입,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新금융서비스 개발 및 디지털전환 촉진
    - \* 오픈뱅킹 서비스 : [가입자] 1억651만명 / [등록계좌] 2억1,181만좌 ('21.11월말, 중복포함)
    - \* 마이데이터 사업자 수 : 본허가 53개사, 예비허가 10개사 ('21.11월말)
- **금융규제 샌드박스, 금융규제 개선 등 추진 결과,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다수 등장**
  - \* 금융규제 샌드박스 : '19.4월 이후 총 185건 지정, 103건의 서비스 출시(~'21.11월)



## 다. 【혁신금융】 정책자금 지원, 기업금융시스템 혁신으로 실물성장 뒷받침

### □ 뉴딜·혁신산업, 창업·벤처분야 등에 대하여 마중물 자금 공급

-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뉴딜분야 정책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 및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이행을 뒷받침

\* 뉴딜펀드 : '21년~'25년간 총 20조원 조성계획 → '21년에 4조원 조성

\* 뉴딜금융 : '21년~'25년간 총 100조원 공급계획 → '21년에 17.5조원 공급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을 통해 각 산업부문별 유망 혁신기업 선정 및 자금지원

\* 835개 기업을 선정하고 자금수요가 있는 기업에 5.1조원 대출·보증·투자 지원

- 성장지원펀드('18년~'20년간 9.9조원 조성\*)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대규모 모험자본을 투자하여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 당초 조성목표(8조원) 대비 1.9조원 초과조성 → '21.11월말까지 6.3조원 투자집행 완료

### □ 기술력, 미래성장성을 토대로 자금조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부동산담보·연대보증 요구\* 등 보수적 기업여신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지적재산권, 동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신평가체계 쇄신

\* '18.4월, 정책금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 지적재산권·동산담보대출 잔액(조원) : ('18) 0.7 ('19) 1.6 ('20) 3.1 ('21.9월) 3.8

기술신용대출 잔액(조원) : ('18) 163.8 ('19) 205.5 ('20) 266.9 ('21.9월) 3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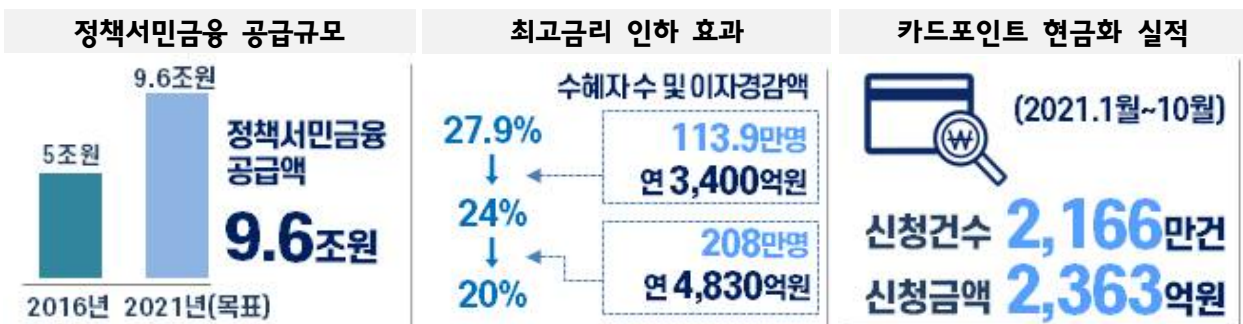
- 성장가능성 중심으로 코스닥 상장요건 개편, 코스피 시총단독요건 도입 등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 확대

\* 신규 상장기업수(코스피+코스닥, 社) : ('18) 91 ('19) 91 ('20) 95 ('21.1~11월) 103



## 라. 【포용·공정금융】 금융의 포용성 확산과 신뢰제고 기반 구축

- **최고금리 인하, 정책서민금융 역할 강화, 중금리대출 공급 등을 통해 서민취약차주의 고금리 부담 경감 및 금융접근성 제고**
  -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sup>①</sup>24%→<sup>②</sup>20%), 연체가산금리 인하(全업권 3%내 인하) 등을 통해 서민층 금융부담 완화
    - \* 정책서민금융 공급액 : ('16년) 5.0조원 → ('21년<sup>목표</sup>) 9.6조원
    - \* 최고금리 인하 수혜자수/이자부담경감액 : <sup>①</sup>113.9만명/年3,400억원, <sup>②</sup>208만명/年4,830억원
  - 소멸시효완성채권 및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연체차주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
    - \* 장기소액연체채권 : 29.1만명(1.5조원)에 대한 소각 완료 (4.4만명(0.1조원) 심사 후 추가소각 예정)
    - \*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자수 : ('16년) 8.1만명 ('20년) 11.5만명 ('21.1~11월) 10.3만명
  -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중금리대출 공급 지속 확대
    - \* 중금리대출 공급현황 및 예상(조원) : ('18) 20 ('19) 24 ('20) 30 ('21) 32 ('22) 35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시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기반 강화
  - 금융상품 판매원칙, 피해방지, 사후구제 등을 종합규율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금융회사 책임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
- **국민체감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를 발굴·시행하여 소비자 편익 제고**
  - 카드포인트 현금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화, 숨은 금융자산 찾기 등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서비스 이용편익을 증진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 등 거래 투명성 제고**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 실시



## 2

## 보완할 점

◆ 정책과제를 신속히 이행하여 정책체감도와 편익을 높이면서, 경제·금융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대응이 필요한 과제 추진

□ 코로나19 위기과정에서 민간부채 증가세가 심화되고 금융불균형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금융안정을 위한 선제관리가 중요한 시점

☑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함께, 자영업자부채의 건전성 점검 필요

☑ 코로나19 위기를 촉발·증폭시켰던 비은행권 리스크 등에 대한 평가 및 보완 필요

□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 빅테크 진출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 잠재 리스크, 기존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등에 관한 문제 제기

☑ 국제논의 등을 감안하여, 혁신·경쟁을 보장하는 규율체계 마련 검토

□ 글로벌 경제구조 변동, 우리 산업·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효과적인 금융지원구조를 마련할 필요성 증대

☑ 우리 경제가 탄소중립, 공급망 변화 등 산업질서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금지원 등 정책지원방안 도입 등 검토

□ 금융상품구조가 복잡해지고, 판매채널이 다변화되는 여건 하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 소지를 차단해 나갈 필요

☑ 사모펀드 등 금융소비자 피해사례 등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근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조치 검토



## II. 2022년 금융정책 추진 여건 및 방향

### 1 금융정책 추진 여건

#### ① 【금융안정 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불균형 심화

- 국내외 경제는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변이 영향 등으로 방역·실물 불확실성 지속
  - 유동성·민간부채 급증, 자산가격 불안정 등이 글로벌 정책기조 전환과 맞물려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융불균형을 경감시키고, 코로나19 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 잠재리스크 관리 등 추진

#### ② 【금융산업 여건】 디지털 혁신, 경쟁 촉진 등 금융산업 지형 변화

- 빅테크·핀테크 진출, 디지털 금융혁신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
- ⇒ “혁신과 경쟁”을 뒷받침하면서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도 함께 구현하는 균형있는 대응을 통해 금융발전 유도

#### ③ 【실물산업 여건】 경제·산업질서의 구조적 변화 전개중

- 선제적 사업재편, 새로운 먹거리 발굴 등을 위한 실물부문의 자금수요 증가 가능
- ⇒ 경제질서 변화 속에서 우리 산업·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금융이 적극 뒷받침

#### ④ 【포용금융 측면】 취약차주 어려움 여전, 소비자보호 강화 필요

-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취약차주에 대한 포용적 금융기조를 지속해 나갈 필요
- ⇒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유지, 위기로부터의 완전한 회복 지원 강화

## 《 2022년 금융정책 추진방향 》

3+1  
정책  
목표

**금융안정·금융발전에 기반한 경제성장 뒷받침**  
**+ 포용금융 확산**

정책  
방향  
및  
핵심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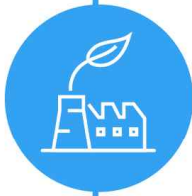
### 01.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 ① 부채관리 및 금융불균형 완화 → 가계·기업부채 관리
- ②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 → 연착륙 유도
- ③ 금융시장·금융산업 리스크 관리 → 취약요인 선제조치



### 02. 금융역동성 제고 및 금융발전 유도

- ①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 제도혁신 및 건전경영 유도
- ② 디지털전환 가속화 → 디지털 전략 수립·제도인프라 구축
- ③ 금융규제 선진화 및 자율성 확대 → 보안규제·내부통제규제 등 개선



### 03. 실물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

- ①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 뒷받침 → 디지털·탄소중립 이행 등 지원
- ② 기업자금 지원체계 고도화 → 벤처 지원 강화, 기업심사체계 혁신
- ③ 자본시장 혁신 유도 → 코넥스시장·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 04. 포용금융 및 금융신뢰 확대

- ① 취약차주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서민금융 공급·신용회복 지원
- ②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소비자 편익증진, 피해근절 등 추진
- ③ 공정성 확립 → 투자자 보호·가상자산 등 관리 강화

### III. 2022년 핵심 추진과제

#### 1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 ◇ 가계부채·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선제관리하면서 금융불균형 완화
- ◇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 및 점진적 연착륙 유도
- ◇ 금융시장 취약요인 선제대응 및 금융산업별 건전성 관리 강화

#### 가. 부채관리 및 금융불균형 완화

□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 강화

##### ① 가계부채 증가세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정상화

- 차주단위DSR 적용 확대\* 등을 계기로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의 단계적 전환 및 유연한 관리 추진

\* 적용범위 : ('22.1월~)가계대출 총액 2억원 초과 차주 ('22.7월~)1억원 초과 차주

-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 부여

\*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체수립한 공급계획을 전부 인정(은행) 등

##### ② 조금씩 나누어 갚는 관행 정착, 금리상승 위험 대비 등을 위해 가계대출 질적구조 개선 지속 추진

- 분할상환대출 취급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

\* 가계대출 분할상환 목표 인상, 분할상환시 한도·금리 인센티브(DSR 산정만기 확대 등), 분할상환전세대출 주신보출연료 인하 및 우수실적 금융회사 추가 우대(최대 14bp 인하) 등

- 금리상승 리스크를 줄이는 고정금리 대출상품 공급 등 확대

\* 고정금리 대출 확대 유도, 보금자리론 등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지속 공급

- 기존 정책모기지의 상환유도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조치

\*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21년말→~'22.6월말)

### ③ 가계부채 잠재리스크에 대비하여 거시·미시건전성 관리 강화

-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를 도입하여 '22년중 시범시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관리수단 검토

\* 적립(안) : GDP 대비 가계부채 갭(gap), 은행별 가계대출 비중 및 증가세, 질적수준 (대출구조 등) 등을 감안하여 자본적립비율(최대 2.5%) 산출

- 가계부채 증가율을 감안한 예금보험료를 차등화\*, 제2금융권의 미사용 한도성여신 총당금 적립 등\*\* 신규 관리조치 시행

\* 차등보험료를 설정시 총대출중 가계대출 비중, 가계대출 증가율·연체율 등 감안  
\*\*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의 미사용 한도성여신에 대해 총당금 적립 및 자본비율 반영

-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 점검

\* 전세대출의 공적보증 과잉의존 축소, 금융회사의 리스크공유(risk-sharing) 유도 등 검토

###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을 분석하고, 맞춤형대책 강구

#### ① 개인사업자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감안하여 건전성 점검 강화

\*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전년동기비) : ('19말) 8.5% ('20말) 14.7% ('21.2Q말) 12.6%

- 개인사업자대출 현황과 함께, 업종별 업황, 매출규모, 영업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실위험 누적 가능성을 종합점검

\* 자영업자부채·상환능력 데이터 등을 종합한 "자영업자부채DB" 구축 검토

-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프로그램의 운영성과 및 보완점 검토\*

\* 코로나19 위기시 구축된 자영업 자금지원체계 및 프로그램의 운영성과 등 점검

#### ② 금리상승 기조,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종료(~'22.3월) 등에 대비하여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등 연착륙 방안을 차질없이 준비

- i) 만기연장 등 지원조치 종료시 충분한 거치·상환기간을 부여하고 컨설팅 등 연착륙 지원

- ii) 회복속도가 느린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상환여력범위 내에서 재기지원 추진

\* 소상공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지원을 위해 폐업후 재창업 자금지원 등 검토

- iii) 잠재부실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채무조정 지원

## □ 중소기업대출 등 기업부채 잠재리스크 점검 강화

### ①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중소기업대출 등 기업부채의 차주별·신용도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금융기관별 '리스크 관리계획' 수립·운영

\* 기업대출 차주유형별로 경영상태, 유동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 채무경감, 선제적 구조조정 등 맞춤형 지원·관리방안 마련

### ② 기업금융 데이터를 집중·관리하면서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하는 '기업금융 데이터 플랫폼' 구축(~'22.12월)

\* 신용정보원에 '기업금융 데이터 플랫폼' 구축 → 간접금융(여신), 직접금융(시장성차입), 공시정보 등을 종합집적하고, 산업별·기업별 익스포져 모니터링 및 리스크 진단시스템 가동

## □ 시장기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및 신용위험평가 체계 고도화

### ① 시장 중심 구조조정 및 중소기업 정상화 촉진

- 자본시장·민간자금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정책금융(기업구조혁신펀드)의 마중물 역할 강화

\* 3차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1조원 이상, 총 운용규모 3.2조원 → 4.2조원 이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투자집행을 가속화(현재 4.2조원중 2조원 투자)

- 중소기업 부실채권 인수 및 투자 확대 인센티브 마련('22.1분기)

\* 중소기업 부실채권(고정이하·연체 6개월 이상) 인수 후 채무조정 지원(캠코)

\* 기업구조혁신펀드(블라인드펀드)에 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도입 추진  
[예 : 중소기업 의무투자비율(35%) 초과(+10%p) 달성시 운용사에 추가성과보수 지급 등]

### ② 시장 자금조달이 어려운 구조조정기업·사업재편기업·회생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그램 보강(캠코)

\* ①기업자산 매각을 뒷받침하는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연장 운영

②'사업재편기업 지원 프로그램' 지속 운영('21년 400억원 → '22년 1,000억원)

③회생기업 대상 자금대여(DIP 금융) 확대('21년 350억원 → '22년 500억원)

### ③ 기업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고도화 추진

\* 기업 신용위험평가의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기준 일부 강화 검토

\* 기업 신용위험평가의 횡수 및 방식을 코로나19 위기이전으로 환원하는 방안 검토  
[※ ('19년) 연 2회 실시 → ('20~'21년) 연 1회 실시 & 평가시 코로나 피해상황 감안]

## 나.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175조원+@)의 질서있는 정상화

### □ 시장안정·기업자금조달 지원 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정상화

- ①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추가 자산매입을 종료하는 등 자산규모 축소
  - 다만, 시장여건 악화시 즉각 재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틀은 계속 유지

- ② 코로나19 P-CBO,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은 잔여재원 범위 내에서 계속 운영하면서 안전판 역할 지속

\* 잔여재원(21.11월말) : (코로나19 P-CBO) 11.7조원중 4.2조원 (차환지원) 6.1조원중 3.6조원

### □ 취약부문 지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시까지 지속하면서 연착륙 유도

- ① 금지·제한·경영위기기업중 소상공인 대상 1.5% 초저금리대출 공급
- ② 신용회복위원회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을 지속하고,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제도의 상시화 및 유예기간 확대\*\*

\* 이자율 감면 확대, 생계·운영자금을 감안한 채무조정 신청요건 완화 등(22년까지 한시적용)

\*\* 채무조정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소득감소시 상환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 ③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기간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기간을 연장(21.12월→22.6월, 필요시 추가연장 검토)

###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시장충격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정상화

\* 현재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예대율 적용 유예 등 8개 유연화 조치 지속중(~'22.3월) → 단계적 정상화 추진

## 다.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잠재리스크 관리

### □ 금융시장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대응 조치 마련

- ①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구조개선 유도
  - CD금리의 대체지표금리로서 RFR(무위험지표금리) 활성화 추진

\* RFR 선물상장(한국거래소), 국책은행·주요은행 중심으로 RFR 기반의 대출상품 출시, 변동금리부채권(FRN, Floating Rate Note) 발행 유도 등 추진

- RP시장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제도개선방안 마련

\* ①청산·결제 리스크 경감방안 마련, ②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RP거래 인프라 구축, ③RP 기일물 활성화 체계 마련 등

② 코로나 위기('20.3~6월)시 증권사·여전사 등 비은행권에서 위기가 증폭된 점을 감안하여 비은행권 위기대응여력을 종합점검(TF 구성\*, '22.1Q)

\* 상시협의체 신설(금융위·금감원·협회 등 참여) → 외화유동성·건전성 등 주기적 점검

- 비은행권(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發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 '20.3월, 주요국 주가 폭락으로 인한 증권사 ELS 마진콜 대응과정에서 외환수요 폭증 등

- 대형여전사·증권사 등의 위기상황분석을 의무화하고, 분석결과 취약평가지 자본확충 요구제도 도입 등 검토

③ 잠재위험요인 식별·선제대응을 위한 정책체계·기관간 공조 강화

\* (예)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정례화,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MOU 개정 추진 등

#### □ 금융업권별 건전성 관리 강화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강화,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자본 적정성, 위험관리실태, 내부통제 등 평가 실시

\* 자본적정성평가 → '22.7월중 실시, 위험관리실태평가 → '22년 하반기중 실시

②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잠재부실위험 대응여력 확충('22.6월)

\* 총당금 적립 강화, 신용공여한도 명확화 등 손실흡수능력 및 리스크 관리 제고

③ 상호금융업권의 동일인 여신한도 축소, 공동대출 한도 설정 등 리스크 관리 강화('22.6월)

\* 동일인 여신한도 : 자기자본 한도기준 중 개인한도 축소(50억원 → 25억원)

\* 공동대출 : 정의(여러 조합이 동일 채무자에 대출) 및 한도(총대출의 20% 이내) 신설

④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의 적정성 심의 및 승인('22.7월)

\* 은행·은행지주회사중 기능, 규모, 타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선정

⑤ 금융위기 상황 발생시 정상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금융지원체계 구축\* 검토

\* 주요국 사례, 금융안정기금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 하에서 정상 금융 회사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 마련 검토(예 : 예보의 채무보증 지원 등)

## 2

## 금융역동성 제고 및 금융발전 유도

- ◇ 금융업권별 제도개선, 건전경영 유도 등을 통해 금융경쟁력 강화
- ◇ 금융부문 디지털혁신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제도인프라 정비
- ◇ 금융규제를 합리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여 금융선진화 기반 마련

### 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 금융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업무범위 확대” 등 금융업권별 제도 정비

##### ① 은행의 원활한 新사업 진출, 종합자산관리자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업무범위 확대\* 추진

\* 플랫폼사업 등 부수업무 범위 확대 검토, 신사업 규제샌드박스 활용 지원

##### ② 보험권이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입정책을 완화하고 부수·겸영업무 범위를 확대

\* 상품채널고객별로 충분히 차별화되는 사업모델에 대하여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 검토

\* ‘생활밀착형 보험서비스’ 출시 유도를 위한 소액단기보험 인가 추진

\*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을 겸영·부수업무로 인정

##### ③ 카드사가 종합페이먼트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데이터 축적·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관련 부수·겸영업무 확대\*\*

\* (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를 카드사에 허용

\*\*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분석업무 등 이외에도 데이터 관련 부수·겸영업무를 추가 확대

##### ④ 디지털 전환 등에 대비하여 금융지주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추진 [예 : 자회사 지배구조 등 금융지주회사 규율체계 및 운영방식 개선 등]

##### ⑤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 유도

\* ① 업무협력 : 빅테크·핀테크와의 업무제휴 등 협력 지원

② 인센티브 강화 :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금고 선정시 반영하는 지자체 확대 등



## □ 금융업권별 건전경영 유도

① 보험사가 단기실적보다는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성과보수 체계 및 공시제도 개선 추진

\* ①성과보수 이연기간 확대, ②성과평가지 재무적 지표 외에 비재무적·정성적 지표 활용 확대, ③장기상품인 보험 특성을 반영한 성과보수 공시사항 개선 등 추진

② 보험업권 IFRS 17 도입('23년)에 따른 재무적 영향 등을 분기별로 면밀히 점검하고 법규 정비('22년중) 및 자본확충수단 확대

③ 신기술금융업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불완전판매 방지, 투자자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진입요건(대주주요건, 인적·물적요건) 개편, 일반/전문투자자 구분 등 추진

## 나. 금융의 디지털전환 가속화

### □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발전전략 수립

① 금융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 ①업권별·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한 「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 마련  
②금융회사 등의 AI 활용 인프라(데이터 Library 및 테스트베드) 구축

② 데이터 결합 수요증가, 異種산업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에 대응하여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 추진

\* ①데이터의 효율적인 결합·활용 등을 위하여 샘플링 데이터 결합제도 도입  
②데이터 결합시 편의성을 높이도록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 추진

③ 개인별 맞춤형 종합금융 플랫폼("My Platform") 도입을 위한 오픈 파이낸스(Open Finance) 추진방안 마련

\* ①오픈뱅킹 참여기관(보험사 등 추가), 이용고객, 서비스(보험정보, 대출·ISA 계좌정보 등 추가)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오픈뱅킹 시스템 개편  
②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 제공정보 확대 등 기능 강화  
③다양한 신규플레이어의 금융결제망 참가를 통해 급여이체, 카드대금, 보험료, 공과금 납부 등 서비스 제공(종합지급결제사업자·지급지시전달업 도입)

④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논의 과정에서 신속한 합의를 도출하여 新금융서비스 신설 및 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 □ 금융산업의 디지털·플랫폼化 진전을 위한 제도 개선·인프라 구축

### ① 은행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 구현·자회사 투자·정보공유 관련 제도 개선

- \*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종합금융앱)” 구현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 \* 핀테크업체 투자제한 개선 등을 통해 산업간 융합 촉진
- \* 은행의 계열사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행위(고객 동의下) 허용 명확화

### ② 보험권에서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구축 및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확대하고,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한 헬스케어스타트업 투자 허용
- \* 「비의료 가이드라인」 개정(복지부), 「요양서비스」 진출 지원(교육부 등) 등 부처 협의 추진
- \*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 허용, 「전금법」 개정시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허용 검토

### ③ 카드사·캐피탈사가 “생활밀착 금융플랫폼”을 통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 결제부터 금융상품 추천, 자금관리, 마케팅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 \*\* Live-커머스 등 플랫폼 사업 확대, MyData와 연계된 보험대리점업 진출 허용 검토

## □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금융안정·소비자보호·공정경쟁 강화

### ① 빅테크의 금융 진출,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비하여 빅테크發 잠재 리스크 점검 및 감독·관리방안 검토

- \* ①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영위형태별 리스크 기반 행위규제 강화
- ② 빅테크그룹의 내·외부 리스크전이 차단을 위한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도입 검토
- ③ 금융회사 위험관리·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빅테크發 제3자리스크 방지체계 구축

### ② 금융분야의 디지털전환에 대비하여 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 온라인 판매채널상 금융상품 설명과정에서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설명의무 이행 가이드라인’ 마련

- \* 온라인 판매채널에서는 소비자의 참여수준에 따라 금융상품 이해도에 편차 발생  
→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비자의 참여수준을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장치 마련

-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를 위해 오프라인 금융 서비스 접근성 제고

- \* 은행 : ① 전국 ATM·점포 API(금융맵·금융대동여지도) 고도화를 통한 정보제공 확대  
② 우체국에 대한 업무위탁 확대(제휴은행 및 서비스 등)  
③ 편의점·백화점을 이용한 캐시백(인출),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 활성화
- \* 저축은행 : 저축은행간 창구 공유(프리뱅킹) 추진  
[예 : 저축은행 창구에서 他저축은행 예금 입·출금 업무 허용 (‘프리뱅킹’)]

## 다. 금융규제 선진화 및 자율성 확대

###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 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과제의 경우 적극적인 규제개선 추진
- ②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을 지정일에서 서비스 출시일로 변경하여 핀테크·금융회사가 충분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
- ③ D-테스트베드를 정식 도입하여, 실현가능성 검증부터 서비스 출시, 규제개선에 이르기까지 디지털금융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①D-테스트베드(실현가능성 검증) → ②혁신금융서비스(서비스 출시) → ③규제개선

### □ 금융회사 자율성 확대 및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보안 규제 체계를 합리화

- ① (클라우드서비스)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정보처리 위탁) 절차 선진화, 보안강화 등을 위해 업무위탁 규제개선\* 추진

\* ①클라우드서비스 이용에 대한 금융당국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완화  
②클라우드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 직접 감독·검사권 확보

- ② (망분리) 우리 금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보안에 관한 원칙 중심의 규제체계 정립을 전제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

\* (예) 사이버공격 수준, 높은 네트워크 연계성(Inter-connectedness) 등

### □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예)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개념 명확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현실적합성 제고 등

### □ 예금보험료율의 적정수준·요율한도 산정을 위한 예보제도 개편 검토

\* ①적정 목표기금 수준, ②금융권 부담 및 예금보호한도·대상, ③과거 구조조정비용 상환·정리 방안 등과 연계하여 검토 → '23.8월까지 개선안 마련

### 3

## 실물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

- ◇ 디지털 진전, 탄소중립 이행 등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
- ◇ 기업자금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여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 ◇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실물부문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확대 유도

### 가.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 뒷받침

- '22년도 정책금융은 200조원 규모로 공급('21년 계획대비 4.7% 확대)
  - \* 산은·기은·신보 자금공급계획 : ('21년 계획) 194.9조원 → ('22년 계획) 204.1조원
  - 미래혁신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을 적극 확대
-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및 제도기반 정비
  - ① '22년중 정책형 뉴딜펀드 구성을 지속('22년중 최대 4조원 조성)하고 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목표를 당초보다 확대\*(18.4조원→18.4조원+@)
    - \* 18.4조원→"18.4조원+@(11조원)" : (산은) 4.5→10 (수은) 5.5→7 (기은) 2.7→3.4 (신보) 5.7→9
    - 뉴딜펀드 운영과정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분야·비수도권 소재 기업 등에 대한 투자폭 확대
  - ② 녹색금융 촉진,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인프라를 구축\*하고 자금지원 확대\*\*
    - \* ①녹색금융촉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②'탄소배출권 선물시장' 도입방안 검토, ③녹색 채권 발행 및 금융권의 녹색분야 자금지원시 녹색분류체계(K-Taxonomy) 활용 유도 등 추진
    - \*\* 탄소중립 이행 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프로그램(산은, 1조원 규모로 신설), 녹색공정전환 특례보증(신보-저탄소공정 전환기업 등 대상으로 5,000억원 보증공급), 넷제로프로그램(산은-재생에너지·수소인프라 부문에 3,000억원 자금공급) 등 운영
  - ③ ESG 공시·투자를 촉진하도록 시장자율에 기반한 규율체계 구축
    -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구체화하고, 'ESG 정보플랫폼\*' 구축·운영
    - \* '21.12월, 한국거래소 구축 → 기업별 ESG 평가등급·재무정보 등을 종합제공하는 역할 강화
    - ESG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ESG평가기관 가이드스\*' 마련
    - \* 평가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평가방식·평가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 활성화 추진
    - 지속가능연계채권, ESG 지수연계 투자상품 등 다양한 ESG 금융 상품 출시를 유도하여 ESG 투자수요 충족

## □ 혁신·R&D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프로그램 운영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을 통해 '22년말까지 혁신기업 1,000개 선정'을 완료하고, 선정된 기업의 혁신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

\* '21.11월말까지 835개社 선정 및 5.1조원 금융지원 → '22년중 혁신기업 추가선정 예정  
\* 既선정기업의 혁신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탈락·신규지원하는 Out/In 제도 마련

## □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하여 사업재편, M&A 등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 ① 기술신용평가(TCB)를 활용\*하여 사업재편 우수기업을 선별하고, 사업재편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유도

\* TCB가 新사업의 타당성, 기존설비 개편방향, 미래기술 중요도, 원청업체간 공급 계약 등을 종합평가하여 사업재편 우수기업 풀(pool) 마련 → 정책금융기관에 제공

- ② 가업승계 중단, 혁신분야 투자 등에 따른 중소기업 M&A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정책금융기관의 M&A 주선·인수금융 기능 강화

\* (산은) M&A파트너십 활성화, (기은) 300억원 미만 M&A딜 신규진출 → 시장실패 보완

## 나. 기업자금 지원체계 고도화

###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및 창업·성장인프라 구축

- ① 산은·성장금융 및 디캠프 공동으로 청년창업지원펀드(프론트윈 펀드, 420억원)를 신규조성하여 유망 스타트업 지원 강화

- ② 창업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신기술금융사의 자금운용 규제\* 등 개선

\* 현행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용자한도(연간 순융자 증가액 ≤ 연간 투자액의 15배 이내) 합리화

- ③ 非수도권 지역의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스타트업 전용 상담 공간인 '디캠프 지역 거점센터' 설립

\* 지자체, 지방은행 등과 협업하여 지역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타트업 발굴행사(프론트윈 Demo Day)를 지방에서 연 2회 이상 개최

## □ 디지털·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금융 심사체계 고도화 유도

### ① 금융공공데이터 중 개인사업자정보 개방\* 추진

\*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후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하여 식별 리스크 제거

### ② 소상공인·중소기업, 新산업분야 등에 대한 효과적인 자금공급 및 정교한 리스크 관리 지원을 위해 기업금융인프라 개편\*

\* (예) 신용정보원의 기업신용정보시스템 개선 : ①집중대상 기업신용정보 확대(예 : 여신잔액→여신상환실적·카드이용실적 등 추가) ②차주별 집중관리체계를 계좌별로 세분화

### ③ 디지털·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여신심사 개선 추진

#### - 정책금융기관 여신심사 과정의 디지털화 및 AI 활용 확대 추진

\* 기은 : 「상담-자료수집-심사-약정」 등 쏘프로세스 디지털 전환(기업여신 자동심사)

\* 산은 : 비정형텍스트 등 외부데이터를 연계·활용하는 AI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

#### - 소상공인·창업기업 등에 대한 대출·보증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플랫폼 데이터, 원·하청 매출입 등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기은·신보)

\* 기은 : 플랫폼 연계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평점, 단골고객수, 리뷰 데이터 활용

\* 신보 : 연성정보(고용 등)·외부데이터(실시간 매출, 전기·수도사용 등) 등 확충

## □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혁신 및 경쟁력 제고 지원

### ① 중소기업 자금조달 애로해소,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제도화(신보법 개정, '22.3월 시행)하고 관련자금 지원('22년 600억원)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 중소기업은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신보에 양도하고 판매대금을 조기회수(→매출채권 회수위험은 신보가 부담)

### ② '22년말까지 기존 연대보증 폐지를 차질없이 추진

### ③ 대·중소기업간 상생, 산업생태계 동반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혁신펀드 및 상생보증프로그램 확대

\* 대기업 출자·출연금과 정책금융을 결합하여 산업생태계내 혁신 중견·중소기업을 지원

- ④ '금융주치의(기은)', '경영컨설팅(신보)' 등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하여 경영·재무상황별로 맞춤형진단 제공
- ⑤ 소상공인의 온라인 영업기반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온라인 플랫폼이 협업하여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협업모델 : (플랫폼) 온라인 스토어 운영·관리 등 (기은) 정책자금 안내, 세무 컨설팅 등

#### □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정책금융지원 강화

- 글로벌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원자재·중간재 수급다변화 등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대출\* 및 소부장 특례보증\*\* 공급 확대

\* 공급망재편 대응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대출프로그램 확대·강화(산은·기은 등)

\*\*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7,500억원 이상 공급(신보)

## 다. 자본시장 혁신 유도

#### □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및 성장사다리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①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기업들의 상장 유지 부담 완화를 통해 신규상장 유도
- ② 기본예탁금 규제(3천만원 이상) 합리화 등 코넥스 투자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투자자 편의 제고

#### □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내 및 해외 상장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 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국내주식('22.3Q) 및 해외주식('21.4Q)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

\* 수익증권발행신탁을 활용하여 온주(온전한 주식 1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

**② 고가주식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등  
향후 서비스 운영경과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 검토**

\* 증권사별 전산개발에 따라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거래를 지원할 예정

□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정비 추진**

- 투자자 중심 판매환경 구축을 위해 펀드 판매보수 체계를 개편하고,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및 펀드관계회사\*\* 감독강화 등 제도 개선

\*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되, 정기적(예 : 매분기말)인 가입·환매를 가능케 하여 환금성 강화

\*\* 채권평가회사(펀드재산 평가), 펀드평가회사(펀드 성과평가), 일반사무관리회사(펀드 사무관리)

□ **감사품질 관리 강화와 기업부담 합리화를 통해 회계투명성 제고**

- ① 감사품질이 우수한 감사인에게 보다 많은 기업이 배정되도록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감사품질 관리수준 제고

- ② 소규모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비상장 중소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기준 간소화 검토 등을 통해 기업부담 합리화

□ **소액공모 기준 합리화 및 전문투자자 대상 공모규제 완화 추진**

※ 美 잡스법(JOBS Act, 2012) : 간이신고서 제출만으로 공모가능한 금액을 5백만불 이하에서 5천만불 이하로 확대하고, 증권매수인들이 전문투자자 뿐인 경우 광고 허용

- ① 기업의 공시부담은 완화하면서,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 한도 확대(현행 10억원)

- ② 청약권유자 수에 관계없이 실제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 사모로 인정(현재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청약 권유시 공모 규제 적용)



## 4

# 포용금융과 금융신뢰 확산

- ◇ 서민 등 취약계층, 청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 ◇ 금융시스템 전반을 소비자친화적으로 전환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상품 마련 추진
- ◇ 금융부문 공정성 제고 및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 유도

## 가. 취약차주별 맞춤형 지원 강화

### □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및 촘촘하고 견고한 지원체계 구축

#### ①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확대하여 '22년중 10조원대 공급 추진

\*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조원) : ('19년) 8.0 ('20년) 8.9 ('21년<sup>목표</sup>) 9.6 ('22년<sup>목표</sup>) 10

#### ② 금융권 스스로 설계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추가출시 추진

\* '21년 햇살론 Банк(은행권), 햇살론 카드(카드사) 등 신규상품 출시 → '22년에는 보험업권 등과 협의를 통해 신규상품 발굴 추진

#### ③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상품개선(대상확대, 지원요건완화 등)\* 추진

\* (예) 근로자햇살론 지원대상 확대 (농·축·임·어업인 등 포함 검토)  
햇살론뱅크 지원요건 완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기간 단축, 1년이상→6개월이상)

#### ④ 취약차주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를 '22년에 한해 일시적으로 증액(+500만원)

\*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대출한도 : (현행) 1,500/2,000만원 → (증액) 2,000/2,500만원

### □ 취약계층의 신용회복 기회를 확대하고 컨설팅 지원 강화

#### 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액 범위를 넓히고,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22.1월~)

\*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범위 : (현행)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 이내 → (확대)10억원/15억원 이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의 신복위 채무조정 시행('22.1월~)

#### ② 취약차주 신용관리 지원을 위한 신복위 컨설팅 지원대상을 확대\*

\* 신복위 신용·복지 컨설팅 지원대상 : (현행) 채무조정 이용자 → (확대) 희망자 포함

□ **청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

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를 법제화하고 책임성 제고**

\* ①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유지요건 등 법제화 및 총자산한도 확대, ②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업무보고서 제출주기 단축, 신용평가시스템 도입 등)

②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본격 시행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관리를 지원**

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청년	만기 및 납입액	지원사항
청년희망적금	총급여 3,600만원 이하	2년 만기 연 600만원 한도	▶저축장려금(최대 36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3~5년 만기 연 600만원 한도	▶펀드납입액의 40% 소득 공제(최대 1,200만원)

③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하여 주택금융상품 특례 강화**

\* 기초생활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전세대출 특례보증한도를 확대  
[예 : 보증한도 現 4천만원→8천만원으로 상향 검토]  
\*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22.9월 운영)의 추가연장 검토

□ **공공부문 중심으로 사회적금융을 차질없이 공급**

○ 민간 사회적금융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공공부문의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 개선 등 관련 인프라 확충

\* '22년 사회적금융 공급목표를 '21년 대비 10% 확대('21년 5,162억원→'22년 5,696억원) 하고, 사회투자펀드(성장금융)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

**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소비자 친화적 금융시스템 구축 및 금융관행 개선 추진**

① **“(독립)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후생증진 관점에서 소비자보호 규제를 지속 정비\*\***

\* 현행 금융상품자문서비스(투자자문업, 은행 PB 등)를 금융회사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시켜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육성

\*\* 연대보증제도 보완,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확대(상호금융 신규도입)

② 소비자보호 기능이 강화되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내실화\*하고, 투자성상품 등 위험성이 큰 금융상품의 판매관행 개선\*\*

- \* 금융회사내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위상 강화, 소비자보호 상시평가체계 구축 등 추진
- \*\* 금융상품 위험등급 산정시, 현행 상품별(주식/채권/펀드/파생 등) 등급 산정방식을 개편하여 개별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성·변동성 등을 반영하도록 개선

③ 금융분쟁조정 전문성·중립성을 높여 신뢰성 제고하도록 분쟁 조정 운영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금융소비자의 불법·부당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 강화

①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예방조치\* 및 최고금리규제 위반 등에 대한 대부업법상 제재수준\*\* 강화

- \*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 차단요청 주체 확대(공공기관 등 추가), 대부중개업자의 온라인 불건전 영업행위 등 규율방안 마련 등 추진
- \*\* ①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대상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도입 및 제재 양정기준 정립  
② 최고금리 규제 위반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신설

② 보이스피싱 대응을 사후적 피해구제 위주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고, 형사처벌 등 강화(「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추진)

③ 소비자가 원치않는 금융상품 전화권유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존 두낫콜(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을 소비자 관점에서 개선

- \* (예) 소비자가 수신거부 시간대 및 수신거부의사 유효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추가

④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구축 관련 입법논의에 참여

- \* (예) 진입(가상자산업자 등록), 발행(백서제출, 발행공시 등), 유통(유통공시 등)의 단계별 규율체계 및 이용자보호장치(불공정거래 금지, 업별 영업행위 규칙 등) 마련

□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노후소득 확대·노후자산 축적 지원

①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우대혜택을 확대

- \* 지원범위 : 가입대상 확대(주택가격 1.5억원 미만 1주택자 → 1.8억원 미만 1주택자)
- \* 우대혜택 :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일반 주택연금에 비해 월지급금을 최대 25% 우대

② 신탁이 고령화에 대비한 종합자산관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개선\* 추진

- \* ① 신탁재산 범위확대, ② 재신탁·업무위탁 허용, ③ 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허용 등

### ③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연금보험상품 개발 유도

- \* ①연령이 증가할수록 연금수령액이 증가하는 점증식 연금보험상품 개발
- ②연금상품별로 미래 예상 연금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보험다모아 시스템' 개선

### □ 다양한 위험에 대응한 보험의 “사적안전망 역할 강화” 지원

#### ①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과잉진료·과다 의료이용 행태 개선 등 실손보험 개선\* 노력

- \* ①비급여관리 : 백내장 등 과잉진료가 심한 비급여항목 관리 강화 (※ 복지부 협의)
- ②합리적 의료이용 : 자기부담률 상향 등 유인구조가 개선된 「4세대실손」 정착 유도

#### ② 감염병·자연재해 등 재난보험 보장강화를 위해 다수 보험사의 공동인수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료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

#### ③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추진

- \*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 개정논의 지원

## 다. 금융부문 공정성 확립

### □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 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및 다양한 제재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확대 등 기능 강화

- \*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를 마련(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하고, 자본시장법령 위반자에 대한 자본시장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도입검토

#### ② 신용평가 품질제고·시장규율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업 제도개선 추진

- \* 無의뢰평가 도입, 이해상충 방지장치 강화, 동태적·상시적 감시체제 강화 등 검토

### □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방지 관리 강화

#### ①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여부 검사\*

- \*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확인 이행,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 구축 여부 검사

#### ②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

- \* ①고위공직자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업무 도입, ②금융회사 퇴직자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③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가상자산 트래블룰(가상자산 이전시 송신인·수취인 정보제공) 정비

## IV. 쟁점과제 관리방안

### 1 가계부채 관리 vs. 실수요 공급

#### □ 개요 및 현황

-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인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긴요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는 증가속도 등이 주요국 대비 빠른 상황으로 적극적 관리 시급

\* 주요국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 변화('16년말 → '21.6월말, %)  
: (한국) 87.3 → 104.2 (일본) 57.3 → 63.9 (프랑스) 56.2 → 65.8  
(독일) 52.9 → 57.8 (영국) 85.3 → 89.4 (미국) 77.5 → 79.2

- 다만, 주거·생계 뒷받침 등 가계부채의 순기능도 고려할 필요

#### □ 쟁점

-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적극적 부채관리'를 강조하는 견해와 '실수요자 안정을 위한 충분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 공존
  - 코로나19 이후 부채 증가세 및 자산가격 상승, 금리상승세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부채관리 필요
  - 다만, 가계부채 관리기조 강화시 서민·실수요자 등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

#### □ 대응 및 향후 조치계획

- 가계부채 증가세는 코로나19 이전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 유도
- 가계부채 관리강화 과정에서 서민·취약차주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실수요 보호와의 균형 모색
  - '22년도 가계부채 총량관리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 부여

## 2

## 최고금리 인하 vs. 저신용층 자금애로

### □ 개요 및 현황

- 취약차주의 금융이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

\* ('16) 27.9% → ('18) 24% → ('21) 20%

- 금년 기준,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2조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 예상

### □ 쟁점

- 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부담경감 효과와 함께, 저신용자의 자금 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으로의 이동 등의 우려도 제기

- 20% 초과금리 대출 이용자중 약 13%인 31.6만명(2조원)의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되고, 약 3.9만명(2,300억원)의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 존재

\* '20.6월 경제여건을 전제로 추정한 것으로, 이용자 수는 다중채무자가 제거되지 않은 수치

### □ 대응 및 향후 조치계획

-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저신용층 자금이용 기회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피해구제 확대

\* 대부업제도 개선방안('21.4월)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자금조달규제 합리화

-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및 중금리대출 확대 유도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21.3월) : 햇살론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공급

\*\* 중금리대출 개선방안('21.4월) : 인터넷은행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등

-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 신용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금융 이용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 V.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경제전반**

**금융불균형 선제 관리**

- 가계부채 증가율 4~5%대 유지
- 총량관리→시스템관리

**코로나19 대응 정상화**

-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
- 단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유도

**경제질서 변화 대응**

- 디지털·그린투자 확대
- ESG 공시 및 투자 확대

**금융시장 취약요인 관리**

- 단기자금시장 안정 유도
- 비은행권 위기대응여력 점검



**금융회사**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 다양한 사업모델 허용
- 업무범위 확대

**금융규제 선진화**

- 샌드박스 활성화
- 내부통제 개선

**디지털 금융혁신**

- AI/데이터인프라 확충
- 종합금융플랫폼 구축

**디지털전환 리스크 대비**

- 빅테크발 잠재리스크 점검
- 소비자보호체계 강화



**소상공인·기업**

**자영업자 연착륙 지원**

- 채무상환 연착륙 지원
- 재기지원 강화

**실물경제 구조전환 대응**

- 뉴딜펀드·뉴딜금융 지원
- 녹색금융·ESG 촉진

**자금지원체계 고도화**

- 창업·벤처, 중소기업 지원 확대
- 디지털·빅데이터 활용

**자본시장 혁신**

- 코넥스시장 기능 회복
-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금융소비자**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 신용회복지원 강화

**소비자친화적 시스템 구축**

- 금융소비자 보호규제 정비
-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

**소비자 피해 근절**

- 불법사금융 예방 강화
- 두낫골(수신거부 의사 등록) 시스템 개선

**노후대비 지원**

- 주택연금 혜택 확대
- 신탁, 연금보험상품 다양화

국정과제	추진현황	향후계획
<p>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해소</p>	<p><b>[가계부채 관리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계부채 관리 및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b>대출규제 강화방안</b> 등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대상지역 내 LTV적용 강화(60%→30~50%),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li> </ul> </li> <li>▶ 가계부채 관리방안(21.4.) 및 관리 강화방안(21.10.)을 마련하여 <b>가계부채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b>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및 서민·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li> </ul> </li> <li>▶ 가계대출 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으로 <b>대출 구조의 질적 개선</b>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 인상, 분할상환시 한도·금리 인센티브 등 강화</li> </ul> </li> <li>▶ 가계부채 원금상환유예, 연체채권 매입 등을 통해 <b>개인채무자 연체방지·재기지원</b></li> </ul> <p><b>[금융소비자보호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금융소비자보호법</b>」 제정(20.3.), <b>하위규정 제정</b>(21.3.) 및 현장 안착 지원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금융회사 책임 강화 등 <b>소비자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6대 판매원칙 쉐 금융상품 확대(위반시 과징금), ②피해방지제도(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권), ③사후구제제도(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금지제도) 도입</li> <li>** “금소법 상황시행반”을 설치하여 현장의 금소법 안착 상황을 모니터링·지원(21.3~9.)</li> </ul> </li> <li>▶ <b>법정 최고금리 인하</b>(27.9%→①24%→②20%) 및 <b>법정부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b>**을 통한 서민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금리 인하 수혜자수/이자부담경감액 : ①113.9만명/年3,400억원, ②208만명/年4,830억원</li> <li>**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 ①(20.6~12) 4,724명 검거, ②(21.7~10) 1,031명 검거</li> </ul> </li> <li>▶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개선, 코로나19 피해자 상환유예, 소액대출·신용카드 등을 통해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한 <b>신용회복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감면폭·감면요건 완화 등</li> <li>* 신복위 소액신용카드 발급(20년 1.1만명→21년 2.5만명)</li> </ul> </li> <li>▶ <b>유한책임대출 정책모기지를</b> 지속 확대*하고 <b>민간 주담대에도 도입 유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한책임 정책모기지(잔액, 조원) : (17말) 0.9 → (21.10월말) 12.7</li> <li>** 유한책임대출 취급 목표치 제시 및 인센티브 제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b>(21.10월)」을 차질없이 이행</li> <li>○ <b>금융소비자보호법</b>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 지속</li> <li>○ <b>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b> 노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대부업 제도개선</li> <li>②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li> <li>③중금리대출 확대</li> </ul> </li> <li>○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한 <b>신용회복</b> 노력 지속</li> <li>○ 서민·실수요자 대상으로 <b>유한책임대출 지속공급 추진</b></li> </ul>



국정과제	추진현황	향후계획
<p>②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p>	<p><b>[금융산업 역동성 제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인가 및 진입 규제 완화 등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토스, '21.6.), 온라인전문보험사 분허가(캐롯손보, '19.10.) 및 예비허가(카카오손보, '21.6.)</li> <li>*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19.1), 신용정보법 개정('20.1.)을 통해 영위업무별 자본금 차등화, 보험업법('20.12.)·시행령 개정('21.6.)을 통해 소액단기보험사 자본금요건 완화(300→20억원)</li> </ul> </li> <li>- 금융업권 경쟁도평가 등을 통해 <b>금융산업 진입규제 합리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18~19년) : 보험업, 부동산신탁업, 은행업, 증권업, 저축은행업 완료</li> <li>* 2차('21년~) : 보험업(2월)→신용평가업(8월)→은행업('22년초 예정)</li> </ul> </li> <li>▶ 금융위 조직신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조직개편 등 <b>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관리·감독체계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금융위 내 "금융소비자국"을 신설('18.7.)</li> <li>② 6개부서 26개팀 → 13개부서 44개팀 확대 및 금융민원총괄국 신설('21.1.)</li> </ul> </li> </ul> <p><b>[금융제도 개선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b>금융회사지배구조법</b>」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CEO의 임추위 참석금지, ② 감사위원 임기보장, ③ 최대주주 자격요건 강화 등 개정안 국회제출('20.6.)</li> </ul> </li> <li>▶ 「<b>금융혁신지원특별법</b>」 제정('19.4.) 및 개정('21.7.) 통한 <b>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b> 및 관련규제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월 이후 총 185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97건의 서비스 출시</li> </ul> </li> <li>▶ 「<b>클라우드펀딩 발전방안</b>」('20.6.)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법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발생기업 범위 : 업력 7년이상 → 비상장중소기업</li> <li>② 투자한도 : 1천만원→2천만원</li> </ul> </li> <li>- 발행한도 상향(15→30억원), 프로젝트투자 대상 사업 확대 등 <b>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b>('21.6.)</li> <li>▶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b>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b>」 국회 논의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전문보험회사 분허가 등 <b>금융부문 경쟁·혁신</b> 지속 유도</li> <li>- 경쟁도평가 결과를 <b>진입규제 개선</b>시 반영</li> <li>○ 금융소비자보호처의 <b>독립성·기능강화</b> 관련 감독실태 지속 점검</li> <li>○ 「<b>금융회사지배구조법</b>」 개정노력 지속</li> <li>○ <b>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b> 및 관련 규제개선 추진</li> <li>○ <b>클라우드펀딩 발전</b>을 위한 「<b>자본시장법</b>」 개정 노력 지속</li> <li>○ 「<b>전자금융거래법</b>」 개정안 통과 추진</li> </ul>

국정과제	추진현황	향후계획
<p>③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p>	<p><b>[코로나 대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20.3.),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20.4.) 시행 등 <b>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실시</b></li> <li>-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대출지원,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으로 민생경제 충격 완화</li> <li>* 소상공인 1차(14.8조원)·2차(7.7조원) 금융지원, 소상공인·중소특례보증 18.7조,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54.3조, 만기연장 272조('21.11末)</li> </ul> <p><b>[채무조정·재기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계부채 원금 상환유예 연체채권 매입 등을 통해 <b>개인채무자 연체방지·재기지원</b> ('20.4월~'21.10월 누적실적)</li> <li>* ①신복위·캠코 특별상환유예 : 203,845건 / 49,190억</li> <li>②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 16,387건/1,273억</li> <li>③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 17,891건 / 7,824억</li> <li>④개인연체채권 매입 : 6,460건 / 422억</li> </ul> <p><b>[금융서비스 개선·상품마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 앱 출시('20.1월), 재무진단서비스 도입('20.4월) 통합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해 <b>온·오프라인 지원체계 개선</b></li> <li>* ①온라인 : 맞춤대출서비스, 휴면금융자산 찾기, 서민금융상품 검색·신청 등 가능</li> <li>②오프라인 : 통합지원센터('17년 39개→'20년 50개)</li> <li>▶ 안정적인 서민금융 자원 마련, 새로운 상품 출시 등 <b>정책서민금융 공급 추진</b></li> <li>* ①서민금융 출연대상을 시중은행 등으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21.5월) 및 시행('21.9월)</li> <li>②햇살론15('21.7월), 안전망대출Ⅱ('21.7월), 햇살론뱅크('21.7월), 햇살론카드('21.10월)</li> <li>▶ <b>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b></li> <li>* ①민간 중금리대출 인센티브체계 등 정비를 위한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10월)</li> <li>②사잇돌대출 보증한도 2조원 추가('21년)</li> <li>③사잇돌대출에 신용점수 요건을 신설하여, 중·저신용층에 공급 확대 유도</li> <li>▶ <b>조세특례제한법 개정</b>('21.1월)을 통한 ISA 제도 영구화 및 ISA 서제개편안 발표('21.7월)를 통한 투자유인 제고</li> <li>* ISA 누적가입액(조원) : ('17) 4.2 → ('21.9월) 10.6</li> <li>▶ 금융회사의 지역경제 성장 지원을 위한 <b>제2차 지역재투자 평가 실시</b>*('21.8월)</li> <li>→ 비수도권 대출 증가에 기여</li> <li>* ①지표개선 : 코로나19지원활동, 점포폐쇄 감점 반영 등</li> <li>②평가위 개편 : 민간위원장, 행안부 정부위원 신설</li> <li>③인센티브 확대 : 금고선정 반영 지자체·교육청 2→7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li> <li>*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22.3.) 및 연착륙 지원, 정책금융 통합 유동성 추가공급 등</li> <li>○ 개별 금융회사 및 신복위 프리워크아웃 특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b>적용시기를 6개월 연장</b> ('21.12.31.→'22.6.30.)</li> <li>○ 맞춤대출서비스 확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연계강화 등 <b>원스톱 온·오프라인 서민금융지원서비스 개선 지속</b></li> <li>○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등 <b>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지속</b></li> <li>○ <b>중금리 대출 확대 기조 유지</b></li> <li>* 금융업권별 특성에 맞는 인센티브 제공→ 중금리 대출 촉진 유도</li> <li>○ ISA세제개편안 국회통과(~'22.1.) 및 제도시행 준비('22년)</li> <li>○ '22년 지역재투자 평가 시행('22.8월 발표)</li> <li>* 관계기관과 인센티브 확대방안 협의 및 평가 타당성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 수정·보완 검토</li> </ul>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1.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 서울시 성동구에서 조그마한 브런치 카페를 운영중인 정씨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카페창업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조차도 어려워졌다. 특히나 대출 만기일이 얼마남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 그러나 며칠 뒤 정씨는 뉴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권이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를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고, 은행창구에 찾아가니 내년 3월까지 만기가 연장되었다고 하여 비로소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정씨는 또한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급작스런 자금부족 애로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2.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좌번호를 몰라도 손쉽게 송금이 가능해졌어요”

- 대학생 김씨는 새롭게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 학생회비, 단체티 구매, 동아리 회비 등 송금을 할 일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누구한테 보내야하는지 확인해서 계좌번호를 일일이 물어보고 점심시간을 할애해 근처 ATM까지 걸어가 송금을 하곤 하였다.
- 그러나 이제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보내야 할 사람이 누군지만 알면 SNS나 앱을 통해 손쉽게 송금을 할 수 있다. 핸드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송금을 할 수 있게 되어 쉬는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다.

3. “자금지원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졌어요”

- 블록체인을 이용한 보안전문기업 대표 A씨는 창업은 하였지만 자금과 경험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기회가 닿게 되어 스타트업 복합지원공간인 프론트원에 입주하게 되었다. 벤처투자자와의 네트워킹이 가능한 데모데이(Demo Day)가 주기적으로 개최되며, 경영컨설팅, IR, 창업공간 지원 등 생애주기별로 창업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영상 애로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장지원펀드에서 투자를 받아 시장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었다.

#### 4. “최고금리가 인하되고,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어 고금리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 연극배우 A씨는 코로나로 인해 무대에 설 자리가 줄어들게 되면서 생계유지가 힘들어졌다. 생계를 위해 은행에도 몇 번이나 찾아가 대출을 시도했으나 마땅한 소득원이 없는 A씨는 **번번이 대출을 거절당**하였고 결국 연 27%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리가 너무 높아 알바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만으로는 이자를 갚는데 급급하여 결혼은 꿈도 꿀 수 없었다.
- 그러나 최근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면서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햇살론15**에 대해 알게 되어 **필요한 생계자금**을 연 15% 금리로 **대출**받아 원금도 갚아나가며 결혼에 대한 꿈을 점차 키워 나갈 수 있게 되었다.

#### 5. “카드포인트를 손쉽게 현금화하고 잠자는 예금액을 찾을 수 있었어요”

-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30대 송씨는 매년 신용카드를 이용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카드를 사용하다보니 카드포인트가 분산적립되고, 포인트 이용절차도 카드별로 복잡하여 **매년 포인트를 버리기만 하였다**.
- 그러나 이제는 카드포인트 현금화서비스를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흩어진 카드포인트를 내 계좌로 보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번 설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찾아뵙지 못했던 부모님께 **현금화한 카드포인트 5만원**으로 **영양제 한 통**을 선물해드렸다.
- 또한 ‘어카운트인포’ 앱을 깔면 **흩어져있는 내 숨은 예금액**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송씨는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초등학교 시절 가입했다가 잊고 지냈던 **예금액**을 찾아 가족들과 함께 소소한 치킨파티를 할 수 있었다.

### 《 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 1. “금융소비자법이 제정되어 금융상품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어요”

- 구로구에 거주하는 60대 신씨,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싶지만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 이해를 못 할까봐 **불안**하기만 하다. 특히 최근 들어 **DLF** 등에 투자를 잘못했다가 원금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뉴스에서 많이 소개되어 걱정이 더 커졌다.
- 그러나 이제는 **금융소비자법 시행**으로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다.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받고, 수익변동가능성, 원금손실여부 등 **투자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이 없어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 2. “ESG 공시의무를 열심히 지키니 기업가치가 높아지고 자금조달이 쉬워졌어요”

- 제조업체인 A사는 ESG경영에 힘쓰고 있다. 친환경 생산설비 구축을 위해 에너지절감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했고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ESG 공시의무를 열심히 준수해왔다. 공시된 정보를 통해 ESG 경영을 중시하는 해외투자자들이 A사의 성장가능성과 스마트 공정방식에 대해 높게 평가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A사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어려운 경기여건 속에서도 생산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강소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 3. “실적이 튼튼한 국내 상장 고가주식도 이제 소수점 주식거래가 가능합니다”

- 20대 사회초년생 A씨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금융공부를 시작하며 바이오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국내 바이오 주에 투자를 하려다보니 한 주당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매수하기도 어려웠다. 또한 공부한대로 다양한 주식을 보유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싶었지만 자금이 충분치 않아 우량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어려웠다.
- 그러나 이제는 국내주식도 소수점 주식거래가 가능하다. 사회초년생도 소규모 자본으로 고가의 주식을 다양하게 매수할 수 있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 4. “흩어진 개인의 정보를 모아 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산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성남시에 사는 30대 워킹맘 B씨는 직장과 집안일에 치여 자산관리에 신경 쓸 시간이 도저히 없다. 분명 월급은 들어오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지, 또 남은 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
- 그러나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채테크 비서에게 이 모든 고민을 맡길 수 있다.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면, 은행 입출금 내역부터 보험가입내역, 통신이용기록, 부동산 등 다양한 정보를 마이데이터 업체가 취합해 소비·자산을 관리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 달은 어디서 지출이 많았는지,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은 무엇인지 알려주어 똑똑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

## 5. “담보가 없어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 “은행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지 않고 없는 것만 요구한다”는 한 중소기업인의 한탄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과 같은 담보가 없어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용도를 평가받아 대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온라인 플랫폼의 평점, 단골고객 수, 도·소매 기업간 매출입 거래변동 등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 대출 및 보증 심사역량을 강화하고 담보가 없어도 기업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